

## 영성수련원 운영위원회 규정

---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영성수련원 운영위원회라 한다.

#### 제2조 (위치)

본 위원회는 총회 내에 둔다.

(단, 사정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영성수련원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에 따라 영성수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성수련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영성수련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영위한다.

1. 개혁교회 신학과 전통을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을 확립한다.
2. 영성수련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 보관한다.
3. 목회현장에 다양한 영성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4. 영성수련에 대한 연구 자료집 등을 출판 보급한다.
5. 목회자, 목사후보생, 신도, 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영성수련을 실시한다.
6. 그밖에 본 운영위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 제2장 조 직

#### 제5조 (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 9인(여성 1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임으로 사려되는 인사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1.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  
총회 공천 목회자 4인, 남·여신도회 각 1인(각 신도회 추천), 전문인 1인을 추천하여 총회가 선임한다.
2. 당연직 위원  
수련원 원장을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

본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에서 아래 임원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수련원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의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원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위원과 후원위원을 둘 수 있다.
5. 기타 본회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소집)**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항과 같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소집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1조 (서면 결의)**

본 운영위원회는 부의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면 결의로써 운영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2조 (정기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총회 직후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는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 13조 (위원회의 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장 수련원의 기구 및 직원

**제 15조 (수련원 직원)**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원장 1인
2. 직원 약간인

**제 16조 (직원의 임무)**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실행하며 수련원 사업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직원은 원장의 지시하는 사무에 종사한다.

**제 17조 (직원의 임명)**

본 영성수련원의 직원 임명은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 제18조(직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장 자산과 회계

#### 제19조 (자산의 구분)

본 영성수련원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0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다.
2. 기본 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다.

#### 제21조 (경비 및 유지방법)

본 영성수련원 운영 경비 및 사업비는 총회 지원과 국내외 교회의 지원금과 찬조금, 영성수련 참가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22조 (회계연도)

본 수련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3조 (감사)

본 수련원은 연 2차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 제6장 해산 및 합병

#### 제24조 (해산 및 합병)

본 수련원을 해산 혹은 합병하고자 하면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

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 귀속)**

본 수련원이 해산하는 때는 정산 후 잔여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한다.

## 제7장 규정 개정

**제26조 (규정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위원회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한다.

## 부 칙

**1. (세칙 및 원칙)**

본 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과 원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한다.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